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0131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3. 20.

판결 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8,210,506원 및 그 중 868,209,601원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42,64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나. 피고 C은 원고에게 42,6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3. 6.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3. 7. 5. 접수 제13593호로 각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변경)	대출은행	대출일자 (변제기한)	대출과목 (대출금액)
1차 보증	2011.3.29.	270,000,000원	2012. 3.29. (2014. 3.28.)	중소 기업은행	2011. 3.29. (2014. 3.28.)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2차 보증	2012.4. 3.	425,000,000원	2014. 4. 3.	중소 기업은행	2012. 4. 3. (2014. 4. 3.)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0원)
3차 보증	2012.5.25.	170,000,000원	2013. 5.24. (2014. 5.23.)	중소 기업은행	2012. 5.30. (2014. 5.23.)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원)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3. 10. 25.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12. 23.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870,965,331원(= 1차 271,563,420원 + 2차 427,800,633원 + 3차 171,601,278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1차 보증과 관련하여 2,755,730원을 회수하여 1차 보증의 대위변제잔액은 268,807,690원(= 271,563,420원 - 2,755,730원)이 남게 되었다. 위 대위변제일부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905원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B은 2013. 7. 5. 본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 C에 게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3. 7. 5. 접수 제13593호로 2013. 6. 2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이후 피고 C은 2013. 7.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3. 7. 5. 접수 제13594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800만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잔액 등 868,210,506원(= 대위변제잔액 868,209,601원 + 확정손해금90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3. 12. 23.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4. 5.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3. 6. 20.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증여계약일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2013. 10. 2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3. 12. 23.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 대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나.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강원도 홍천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무868,209,601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C의 선의 여부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가액의 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거래관념에 비추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14. 10. 30.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42,64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액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42,64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42,644,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2,6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이상률, 판사 김유신